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강명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9
----------	------

발의일 : 2013. 11. .

발의자 : 강명권 의원

1. 제안이유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돋는 것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 나. 입양가정 지원 사업을 정함 (안 제4조)
- 다. 지원범위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라.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함(안 제6조)
- 마. 지원신청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 (안 제7조)
- 바.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자체 없이 환수하도록 함 (안 제9조)
- 사. 조례에 의한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3. 관계법령

4. 입법 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기타 참고사항(집행부의견)

- 명칭변경: “입양장려금”을 “입양축하금”으로 변경
- 부칙의 시행일을 2014년1월1일 에서 2014년7월1일로 변경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입양 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5.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6. "입양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의 실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 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 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단, 입양아동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 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입양가정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하금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은 입양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 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입양부모)	부		주민등록번호	-		
	모		주민등록번호	-		
입양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입양기관		입양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번호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충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충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

* 아래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

신 청 인 (입양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주소 : - 입양아동 생년월일 :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지원여부	결정()	미결정()			
작 성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